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0. 20(목) 10:00

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44호

나. 제 출 자 : 도병두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10. 7.

라. 회부일자 : 2022. 10. 7.

2. 제안이유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 옴부즈퍼슨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
(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신설(제6항, 제7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2. 10. 11. ~ 10. 17.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아동 옴부즈퍼슨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옴부즈퍼슨의 용어를 정의함

2)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 (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신설(제6항, 제7항)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성인원과 주요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검토의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명시한 협약임. 이 협약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고,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

○ (금천구)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진행 경과

- ▸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10. 13.
- ▸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 2019. 1. 15.
- ▸ 아동친화도시 1차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완 : 2019. 3. 25.
- ▸ 아동친화도시 2차 대면심의 : 2019. 6. 19.
- ▸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 : 2019. 7. 8.
- ▸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 2019. 8. 22.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의 구체적인 사항 중 아동 옴부즈퍼슨의 실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